

화학 · 생물무기 금지법 24일 설명회

산업자원부는 4월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<화학 · 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,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· 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>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.

1월23일에 이어 2번째로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화학 · 생물무기 금지법이 정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· 보유 신고, 수출입 허가제도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.

2007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학 · 생물무기 금지법은 생물무기의 개발 · 제조 · 보유는 물론 생물무기를 개발 · 제조할 목적으로 인체 및 동식물에 피해를 주는 미생물, 바이러스 등 생물작용제와 독소의 제조, 보유, 운송,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.

아울러 질병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나 독소를 제조 · 보유할 때는 신고하고 수출입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.

화학 · 생물무기금지법 설명회의 일정

주 제	발표기관	시 간
생물작용제 및 독소 관리제도	산업자원부	15:00~15:20
전략물자관리와 호주그룹 통제 품목	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	15:20~15:40
생물작용제 및 독소 신고요령	한국바이오산업협회	15:40~16:00
생물작용제 관련기관 제도운영 - 인체 · 인수병원균(고위험병원체) - 동물병원균(가축전염병원체) - 식물병원균(식물병해충)	질병관리본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	16:00~16:30
질의 및 응답		16:30~17:00

한편, 생물작용제는 인간 또는 동식물에게 사망, 질병, 영구적 상해 등을 유발하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탄저균, 콜레라균, 도열병균, 구제역바이러스 등 54종이 규정돼 있다.

또 독소는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 중 인간 또는 동식물에게 사망, 고사, 질병,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툴리눔 독소, 포도상구균장독소, 코노독소 등 13종을 규정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7/04/23>